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18년 7월 24일 평창군수가 제출하였으며, 8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임.

I. 제안이유

- 연도 중 보조내시 된 국·도비 보조사업,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비, 5월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복구비,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한 지방채 조기상환 등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려는 것임.

II. 주요내용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48,781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3,957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4,485백만원이 증액된 404,177백만원, 특별회계는 9,472백만원이 증액된 44,605백만원 임.
-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일반회계가 세외수입 544백만원, 지방교부세 38,985백만원, 국·도비보조금 3,481백만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474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248백만원, 국·도비보조금 89백만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9,135백만원이 증액됨.
-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정책사업비 307,278백만원, 재무활동 42,490백만원, 행정운영경비 54,409백만원, 특별회계는 정책사업비 39,425백만원, 재무활동 3,596백만원, 행정운영경비 1,584백만원 임.

Ⅲ. 예산개요

1. 회계별 예산규모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48,781,131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3.67%인 53,956,906천원이 증액된 규모임.
- 일반회계는 404,176,561천원으로 44,485,050천원(12.37%)
- 특별회계는 44,604,570천원으로 9,471,856천원(26.96%)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음.

《회계별 예산 규모》

(단위:천원)

구	분	2회추경예산안		기정액	비교증감	
		예산액	%		증감액	%
합	계	448,781,131	100.00	394,824,225	53,956,906	13.67
일	반 회 계	404,176,561	90.06	359,691,511	44,485,050	12.37
특	별 회 계	44,604,570	9.94	35,132,714	9,471,856	26.96
	공기업특별회계	23,386,367	5.21	16,919,739	6,466,628	38.22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3,386,367	5.21	16,919,739	6,466,628	38.22
	기타특별회계	21,218,203	4.73	18,212,975	3,005,228	16.50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395,605	0.09	353,568	42,037	11.89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2,817,000	0.63	930,200	1,886,800	202.84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특별회계	149,553	0.03	150,200	△647	△0.43
	농공단지조성및관리 사업특별회계	678,175	0.15	678,175	0	0.00
	수질개선특별회계	16,857,815	3.76	15,775,832	1,081,983	6.86
	주택사업특별회계	320,055	0.07	325,000	△4,945	△1.52

2.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세입규모는 기정액 대비 12.37%인 44,485,050천원이 증액된 404,176,561천원 임.
- 자체수입은 41,626,853천원으로
 - 세외수입 544,217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 이전수입은 336,212,710천원으로
 - 지방교부세 38,985,447천원, 보조금 3,480,949천원이 각각 증액 되었음.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6,336,998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1,474,437천원이 증액 되었음.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황》

(단위:천원)

구 분		2회추경예산안		기정액	비교증감	
		예산액	%		증감액	%
합 계		404,176,561	100.00	359,691,511	44,485,050	12.37
자 체 수 입	소 계	41,626,853	10.30	41,082,636	544,217	4.40
	지방세수입	28,722,003	7.11	28,722,003	0	0.00
	세외수입	12,904,850	3.19	12,360,633	544,217	4.40
이 전 수 입	소 계	336,212,710	83.18	293,746,314	42,466,396	14.46
	지방교부세	232,070,981	57.42	193,085,534	38,985,447	20.19
	조정교부금등	7,750,000	1.92	7,750,000	0	0.00
	보조금	96,391,729	23.85	92,910,780	3,480,949	3.75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6,336,998	6.52	24,862,561	1,474,437	5.93

【세출예산안】

-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세출규모는 기정액 대비 12.37%인 44,485,050천원이 증액된 404,176,561천원 임.
- 정책사업비 32,047,991천원, 재무활동 11,072,703천원, 행정운영경비 1,364,356천원이 증액 되었음.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

(단위:천원)

구 분	2회추경예산안		기정액	비교증감	
	예산액	%		증감액	%
합 계	404,176,561	100.00	359,691,511	44,485,050	12.37
정 책 사 업	307,277,570	76.03	275,229,579	32,047,991	11.64
재 무 활 동	42,490,004	10.51	31,417,301	11,072,703	35.24
행정운영경비	54,408,987	13.46	53,044,631	1,364,356	2.57

○ 기능별 세출예산안은

- 일반공공행정분야는 기정액 대비 13,535,666천원이 증액된 42,698,818천원
- 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 1,450,805천원이 증액된 9,015,632천원
- 교육분야는 22,153천원이 증액된 2,312,650천원
- 문화및관광분야는 5,829,154천원이 증액된 51,469,980천원
- 환경보호분야는 34,587천원이 감액된 28,334,352천원
- 사회복지분야는 3,341,101천원이 증액된 62,031,661천원
- 보건분야는 1,759,209천원이 증액된 11,028,614천원
- 농림해양수산분야는 6,451,072천원이 증액된 68,654,563천원
- 산업·중소기업분야는 304,502천원이 증액된 3,373,413천원
- 수송및교통분야는 3,708,334천원이 증액된 15,716,136천원
- 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 5,727,359천원이 증액된 51,083,122천원
- 예비비는 1,005,992천원이 증액된 4,028,699천원
- 기타분야는 1,384,290천원이 증액된 54,428,921천원이 편성됨.

《기능별 현황》

(단위:천원)

구 분	2회추경예산안		기정액	비교증감	
	예산액	%		증감액	%
합 계	404,176,561	100.00	359,691,511	44,485,050	12.37
일반공공행정	42,698,818	10.56	29,163,152	13,535,666	46.41
공공질서및안전	9,015,632	2.23	7,564,827	1,450,805	19.18
교육	2,312,650	0.57	2,290,497	22,153	0.97
문화및관광	51,469,980	12.73	45,640,826	5,829,154	12.77
환경보호	28,334,352	7.01	28,368,939	△34,587	△0.12
사회복지	62,031,661	15.35	58,690,560	3,341,101	5.69
보건	11,028,614	2.73	9,269,405	1,759,209	18.98
농림해양수산	68,654,563	16.99	62,203,491	6,451,072	10.37
산업·중소기업	3,373,413	0.83	3,068,911	304,502	9.92
수송및교통	15,716,136	3.89	12,007,802	3,708,334	30.88
국토및지역개발	51,083,122	12.64	45,355,763	5,727,359	12.63
예비비	4,028,699	1.00	3,022,707	1,005,992	33.28
기타	54,428,921	13.47	53,044,631	1,384,290	2.61

○ 조직별 세출예산안은

- 자치행정과 58,331,683천원(14.43%)
- 주민생활지원과 55,110,849천원(13.64%)
- 안전건설과 54,410,237천원(13.46%) 순으로 편성됨.
- 기정액 대비
 - 재무과 114.43%(공유재산특별회계 전출금 1,837,295천원)
 - 올림픽기념사업단 60.91%(평창평화포럼 부담금 1,000,000천원)
 - 기획감사실 56.06%(중앙정부차입금원금상환 9,000,000천원) 순으로 증액 되었음.

《조직별 현황》

(단위:천원)

구 분	2회추경예산안		기정액	비교증감	
	예산액	%		증감액	%
합 계	404,176,561	100.00	359,691,511	44,485,050	12.37
본 청	332,501,039	82.27	295,499,709	37,001,330	12.52
기획감사실	28,365,455	7.02	18,176,463	10,188,992	56.06
문화관광과	32,764,285	8.11	28,885,169	3,905,124	13.53
주민생활지원과	55,110,849	13.64	52,832,647	2,278,202	4.31
종합민원과	1,833,589	0.45	1,739,433	94,156	5.41
자치행정과	58,331,683	14.43	55,290,852	2,547,880	4.57
재무과	4,089,376	1.01	1,907,101	2,182,275	114.43
경제체육과	12,480,813	3.09	21,728,939	1,390,259	12.54
환경위생과	21,324,967	5.28	22,976,523	△1,661,556	△7.23
산림과	16,159,628	4.00	15,129,435	1,030,193	6.81
안전건설과	54,410,237	13.46	45,668,905	8,741,332	19.14
도시주택과	32,048,017	7.93	27,484,772	4,563,245	16.60
올림픽기념사업단	2,702,259	0.67	1,868,395	1,022,915	60.91
올림픽시설과	1,168,515	0.29	706,200	63,640	5.76
시설관리과	11,711,366	2.90	1,104,875	654,673	5.92
직속기관	54,625,853	13.52	49,506,883	5,118,970	10.34
보건의료원	11,712,822	2.90	9,757,014	1,955,808	20.05
농업기술센터	42,913,031	10.62	39,749,869	3,163,162	7.96
의회사무과	950,569	0.24	950,569	0	0.00
상하수도사업소	9,748,705	2.41	7,553,196	2,195,509	29.07
읍 면	6,350,395	1.57	6,181,154	169,241	2.74

○ 성질별 세출예산안은

- 인건비는 기정액 대비 2,455,320천원이 증액된 48,825,827천원
- 물건비는 2,122,763천원이 증액된 30,305,812천원
- 경상이전비는 5,924,559천원이 증액된 109,328,318천원
- 자본지출은 21,903,713천원이 증액된 169,050,901천원
- 보전재원은 9,000,000천원이 증액된 21,170,000천원
- 내부거래는 574,386천원이 증액된 19,907,996천원
- 예비비및기타는 2,504,309천원이 증액된 5,587,707천원이
각각 편성되었음.

《성질별 현황》

(단위:천원)

구 분	2회추경예산		기정액	비교증감	
	예산액	%		증감액	%
합 계	404,176,561	100.00	359,691,511	44,485,050	12.37
인 건 비	48,825,827	12.08	46,370,507	2,455,320	5.30
물 건 비	30,305,812	7.50	28,183,049	2,122,763	7.53
경 상 이 전	109,328,318	27.05	103,403,759	5,924,559	5.73
자 본 지 출	169,050,901	41.83	147,147,188	21,903,713	14.89
보 전 재 원	21,170,000	5.24	12,170,000	9,000,000	73.95
내 부 거 래	19,907,996	4.93	19,333,610	574,386	2.97
예비비및기타	5,587,707	1.38	3,083,398	2,504,309	81.22

3. 특별회계

- 2018년도 제2회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4,604,570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9,471,856천원이 증액된 규모로
- 공기업특별회계는 23,386,367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6,466,628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 기타특별회계는 21,218,203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3,005,228천원이 증액 되었음.

《특별회계 예산현황》

(단위:천원)

구	분	2회추경예산안		기정액	비교증감	
		예산액	%		증감액	%
특별회계		44,604,570	100.00	35,132,714	9,471,856	26.96
	공기업특별회계	23,386,367	52.43	16,919,739	6,466,628	38.22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3,386,367	52.43	16,919,739	6,466,628	38.22
	기타특별회계	21,218,203	47.57	18,212,975	3,005,228	16.50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395,605	0.89	353,568	42,037	11.89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2,817,000	6.32	930,200	1,886,800	202.84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특별회계	149,553	0.34	150,200	△647	△0.08
	농공단지조성및관리 사업특별회계	678,175	1.52	678,175	0	0.00
	수질개선특별회계	16,857,815	37.79	15,775,832	1,081,983	6.86
	주택사업특별회계	320,055	0.72	325,000	△4,945	△1.52

IV. 검토결과

1. 예산안 총규모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48,781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3,957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일반회계는 404,177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4,485백만원(12.37%)
- 특별회계는 44,605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9,472백만원(26.96%)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음.

2.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44,485백만원이
증액된 404,177백만원임.
- 지방세수입은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으며
-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544백만원이 증액된 12,905백만원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동강따라 천리길 조성사업 120백만원,
지역전략식품 산업육성사업 25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그 외수입 170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38,985백만원이 증액된 232,071백만원으로
보통교부세 36,932백만원, 부동산교부세 2,05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조정교부금은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으며,
-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3,481백만원이 증액된 96,392백만원으로
국고보조금 1,372백만원, 시·도비보조금 2,109백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음.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1,474백만원이 증액된
26,337백만원으로, 전년도이월금 1,484백만원을 증액하고
전입금을 10백만원 감액 편성하였음.

3.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44,485백만원이 증액된 404,177백만원 임.

○ 정책사업은 기정액 대비 32,048백만원이 증액된 307,278백만원

○ 재무활동은 11,073백만원이 증액된 42,490백만원

○ 행정운영경비는 1,364백만원이 증액된 54,409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기능별 세출예산은

농림해양수산 68,655백만원(16.99%)

사회복지 62,032백만원(15.35%)

기타 54,429백만원(13.47%) 등의 순으로 배분되었으며

○ 조직별 세출예산은

- 자치행정과 58,332백만원(14.43%)

- 주민생활지원과 55,111백만원(13.64%)

- 안전건설과 54,410백만원(13.46%) 순으로 배분되었음.

○ 성질별 세출예산은

자본지출 169,051백만원(41.83%)

경상이전비 109,328백만원(27.05%)

인건비 48,826백만원(12.08%) 등의 순으로 배분되었으며

지방채 조기상환 계획에 따라 보전재원이 73.95%인 9,000백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올림픽이후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반환금으로 인한 예비비및기타의 증가가 81.22%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4.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2018년도 제2회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4,605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9,472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6,467백만원**이 증액된 **23,386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역의 배수관로 확장공사와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편성에 따라 증액된 것임.
-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42백만원** 증액된 **396백만원**이 편성되었고
-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는 **1,887백만원** 증액된 **2,817백만원**으로, 균유지 집단화 사업으로 **2,000백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113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082백만원**이 증액된 **16,858백만원**이며,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과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용역비 편성에 따른 것임.

5. 계속비사업

- 계속비 사업은 사업을 완료하는데 수년이 걸리고 1년 단위의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 완공까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5년 이내로 사업을 추진하는 제도로
- 현재 계속비사업은 일반회계 15건, 특별회계 6건으로 총 21건이며 금회 추경에 변경되는 계속비 사업은
 - 평창송어종합체험장 건립 60백만원
 - 평창보건의료원 이전 신축 1,300백만원,
 - 방림(계촌)농어촌생활용수개발 2,000백만원 등 3건의 사업에 대해 3,360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계속비 사업변경내역>

[단위: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총사업비			2017년 까지	2018년	2019년 이후
		당초	변경	증감			
합계	21개사업	311,855	315,215	3,360	243,864	31,602	39,749
1	지하시설물전산화사업	1,718	1,718	0	1,263	455	0
2	노람뜰 녹색치유 및 레포츠단지조성	8,800	8,800	0	8,800	0	0
3	평창송어종합 공연체험장건립	9,805	9,865	60	9,105	760	0
4	평창올림픽 힐링체험파크 조성	3,740	3,740	0	1,040	2,700	0
5	광천선굴어드벤처 테마파크조성	6,510	6,510	0	710	1,600	4,200
6	대관령 공공도서관 건립	2,000	2,000	0	1,248	752	0
7	평창강 생태하천조성사업	16,182	16,182	0	9,369	2,328	4,485
8	홍정천 하천재해예방사업	32,700	32,700	0	13,498	4,890	14,312
9	평창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재수립	7,500	7,500	0	2,100	2,200	3,200
10	황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2,776	12,776	0	12,776	0	0
11	중부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0,054	10,054	0	7,067	2,987	0
12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2,209	2,209	0	671	1,538	0
13	평창읍 중부리 행복주택 건립사업	6,580	6,580	0	680	0	5,900
14	평창동계올림픽 특구 도시경관 지원	55,718	55,718	0	55,718	0	0
15	평창보건의료원 이전 신축	10,539	11,839	1,300	7,904	3,935	0
16	창리천 유수확보 및 생태하천복원	10,258	10,258	0	9,558	700	0
17	도암댐 상류 비점오염저감사업	34,300	34,300	0	32,407	757	1,136
18	평창동계올림픽급수체계 구축	60,872	60,872	0	60,872	0	0
19	방림(계촌)농어촌생활용수개발	11,669	13,669	2,000	4,898	5,571	3,200
20	삼양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공사	4,000	4,000	0	4,000	0	0
21	방림(구포동)농어촌하수도 정비사업	3,925	3,925	0	180	429	3,316

6. 종합검토의견

□ 세입예산안을 보면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은 총 540억원 규모로 주요 재원은 지방교부세 390억원, 보조금 36억원, 기정예산 편성이후 증가분 등의 확정금액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잉여금 85억원은 결산에 따라 편성하였음.

□ 세출예산안을 보면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총 540억원 규모로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변경 보조사업 변경과 법정 의무경비부담, 국비 집행잔액 반납, 불가피한 주민생활민원 해소를 위해 편성하는 것이 관례였으나, 지방교부세 증가로 인해 신규사업이 다수 편성되어 있으며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상환을 위해 90억원이 편성 상환함으로써 건전재정 운영에 노력한 모습도 나타남.
- 금회 편성된 3억이상 신규 및 증액 편성된 예산은 예산이 이월 또는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주요사업 현황(3억원 이상 증액)>

[단위: 백만원]

소관부서	사업명	예산액			비고
		예산액	가정액	증감액	
합 계	40개사업	43,039	16,830	26,209	
올림픽기념사업단 (2)	올림픽 개최지역 서비스업종 시설개선사업	350	0	350	도비보조
	평창평화포럼 개최	1,000	0	1,000	자체사업
문화관광과 (3)	평창 숲속 뮤직&힐링 사업지원	800	0	800	도비보조
	월정사전시관 주변 전선지중화 정비사업	340	0	340	자체사업
	월정사 북대 미륵암 복원사업	1,700	1,000	700	도비보조
자치행정과 (3)	주민공지사항 안내시스템 통합발령 시스템 구축	300	0	300	도비보조
	커뮤니티센터 및 공연장 조성	500	0	500	국고보조
	커뮤니티센터 매입	400	0	400	국고보조
재무과(1)	군유지 집단화 사업	2,790	790	2,000	자체사업
경제체육과(1)	마중물 일자리사업 인건비	1,000	400	600	자체사업
환경위생과 (2)	노동리 하수관로 정비공사	300	0	300	자체사업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용역	500	0	500	자체사업
산림과(1)	산양삼클러스터 생산단지 조성	600	0	600	자체사업
안전건설과 (13)	간평교(D급)재가설공사	3,000	1,800	1,200	자체사업
	군도1호선(상리~종부)도로 확포장	500	200	300	자체사업
	군도 아스콘 덧씌우기	900	0	900	자체사업
	농어촌도로 용평202호(등매교) 도로확포장	400	0	400	자체사업
	농어촌도로(미탄201호) 확포장사업	400	0	400	자체사업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700	300	400	자체사업
	소교량 가설	1,000	500	500	자체사업

소관부서	사 업 명	예 산 액			비고
		예산액	가정액	증감액	
안전건설과 (13)	하천,소하천 정비사업	1,750	1,250	500	자체사업
	하천 우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	800	300	500	자체사업
	도·배수로 정비사업(8개읍면)	3,300	3,000	300	자체사업
	방림4리(중앙) 도배수로 정비	500	0	500	자체사업
	농업기반시설 수해복구	949	0	949	자체사업
	농산물반출 도로정비 사업 (8개읍면)	3,500	3,000	500	자체사업
도시주택과 (4)	시가지 주차장 조성공사	1,775	1,100	675	자체사업
	미불용지 보상금	800	300	500	자체사업
	황계6리 침수지역 정비사업	2,395	0	2,395	자체사업
	벽지 및 비수익노선 버스운송 손실액지원	1,062	700	362	도비보조
시설관리과(1)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	2,190	1,790	400	자체사업
보건사업과 (3)	보건의료원 주차장 조성비	800	0	800	자체사업
	보건의료원 청사이전 집기류 구입	300	0	300	자체사업
	보건지소 진료사업 운영	800	400	400	자체사업
상하수도사업소 (6)	진부면 송정1리(약수동)배수관로 확장공사	750	0	750	자체사업
	평창읍 대상리 배수관로 확장공사	600	0	600	자체사업
	미탄면 회동2리(깨비마을) 배수관로 확장공사	380	0	380	자체사업
	대화면 하안미리 배수관로 확장공사	460	0	460	자체사업
	용평 진부면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448	0	448	자체사업
	방림(계촌지역)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2,000	0	2,000	자체사업

- 금번 추경에 편성된 연구용역비 사업은 총 6개 사업에 216백만원으로 기존 사업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도 있으나 대규모 신규 사업을 위한 타당성 용역도 포함되어 있음.
모든 용역은 추진을 염두에 둔 행정중심 잣대에서 실시되기 보다는 냉철한 판단을 통해 보편타당한 결과가 발생되어 평창군 재정에 큰 부담요소로 번져가는 일이 없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음.

<신규 연구용역비>

[단위:천원]

소 관 부 서	사 업 명	편성액	비 고
계	6개 사업	216,000	
문 화 관 광 과	백룡동굴 활용방안 용역	110,000	p141
	사과리공원조성 타당성검토 및 기본계획용역	22,000	p146
주민생활지원과	제2차 평창군 장사시설 수급계획 연구용역	22,000	p160
산 립 과	산림레포츠길(MTB)기본계획 수립(변경)용역	22,000	p208
도 시 주 택 과	평창군 버스터미널 운영방안 연구용역	20,000	p223
	평창군 농어촌버스 노선개편 연구용역	20,000	p223

- 금번 추경에 신규 및 증액 편성된 행사·축제예산은 평창 숲속뮤직& 힐링사업 8억원 등 11개 사업에 총 14억원이 편성되어, 일부 농산물 홍보 등 바람직한 예산도 있으나, 행사 축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투자대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소모성 행사개최에 따른 예산낭비라는 부정적 측면이 항상 상존하고 있고 사업의 계획성 측면에서 즉흥적인 행사개최라는 비판이 일부 제기되고 있는 점과 다른 지역보다 산발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우리지역 축제 현실을 고려할 때 선택과 집중을 통해 낭비적인 요소를 해소함은 물론 대표축제 육성을 통해 스스로가 경쟁력을 갖춰 나가야 할 것으로 검토됨.

<축제예산(신규,증액)>

[단위:천원]

소 관 부 서	사 업 명	편성액	비 고
계	11개 사업	1,365,400	
문 화 관 광 과	평창 숲속 뮤직& 힐링 사업	800,000	p140
	겨울관광자원조성(송어축제장포토존)	80,000	p143
	겨울관광지(축제장) 안전시설물 조성	20,000	p143
	겨울관광지 체험프로그램운영	20,000	p143
	진부관광기반시설조성(송어축제 상설체험시설)	70,000	p143
	꿈의대화 캠핑장 및 축제장 시설보수	20,000	p143
	축제조성 시설물(정설기) 임차	40,000	p145
	평창강 뮤직 콘서트 행사지원	50,000	p145
	평창송어축제 홍보 및 행사지원	80,000	p145
농 축 산 과	고랭지 배추 홍보	170,000	p255
	김장 제조용 기계 구입	15,400	p255

- 결산결과에 따른 국·도비잔액 반환금은 총 4,797백만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를 반납하는 것임.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된 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유와 문제점은 없는 지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국·도비 반환금 (1억 이상)>

[단위:천원]

소 관 부 서	사 업 명	편성액	비 고
계	2건	860,729	
경 제 체 육 과	2017년도 강원일자리특별지원사업 (집행잔액) ※도비보조	560,729	p195
농 축 산 과	2017년 축산물직거래활성화 지원사업 ※국고보조	300,000	p265

- 평창군 안보공원, 대관령복지회관 신축, 보건의료원 이전신축 등은 사업 입안 시 정확한 산출을 통해 예산편성을 하여야 하나,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을 통해 증액사유가 발생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 안보공원 : (당초) 200백만원 (추경) 215백만원
 - 대관령복지회관 신축 : (당초) 800백만원 (추경) 915백만원
 - 보건의료원 이전신축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국 비	도 비	군 비
'2017. 7월	9,636	4,558	1,139	3,939
현 재	11,839	4,558	1,139	6,142
증가율	122.9%	0	0	155.9%

- 이 밖에 본 추가경정 예산안의 각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와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V.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28조(계속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으면 그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0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127조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